

의안 번호	1642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심사 보고서</b>
----------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5. 29.(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6. 17.(수)

## 2. 제안설명 요지(안전도시국장 김석규)

### 가. 제안이유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조례로 일정 규모 이상을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심의 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조성하고,
-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조례상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전체면적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타구·군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추가(안 제17조제1호 및 제2호)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 공공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 조정(안 제18조제2호)
  - 면적 1,000m<sup>2</sup> 미만 건축물 → 1,000m<sup>2</sup> 이상 건축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다. 근거법규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유경달)

-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공공건축물 심의 대상규모를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의 입안의 기본원칙인 상위법과의 체계정당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수정안 참조

**[붙임]**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u>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업”</u>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p> <p>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p> <p>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p>	<p>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 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p> <p>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p> <p>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p> <p>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p>

## 근 거 법 규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의 사업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영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